

# 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 신정아 씨, 문화일보 상대 10억 손해소 “nud 사진 게재 명예훼손”

신정아 씨가 자신의 nud 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신 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nud 사진을 촬영하거나 문화계 인사들을 상대로 성 로비를 벌인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nud 사진을 지면에 게재해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고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손해배상 외에 ‘신문에 실린 사진은 합성사진으로 신 씨가 nud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성 로비를 한 적도

없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화일보는 nud 사진을 신고 마치 이 같은 사진의 존재가 문화계 유력 인사에 대한 성 로비의 증거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교묘하게 기사를 작성했다”며 “이는 사적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들끓는 여론과 강도 높은 수사의 와중에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가한 가혹한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문화일보에 실렸던 신 씨 nud 사진

이 합성사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nud 사진은 개인의 사생활이고 우리가 수사한 범죄 혐의와 관련도 없기 때문에 조사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9월 13일자 1면에 ‘신정아 nud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3면 기사에서 nud 사진과 함께 성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일보는 ‘인격살인’ 등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한 달 뒤인 10월 18일자 1면에 사과문을 내보냈다.

경향신문 2007년 11월 9일

### “허위기사 책임, 1억 6천만 원 배상”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허위 기사로 경기도 양평군수 보궐선거에 나온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시켜 결국 낙선하게 한 책임을 물어 취재기자과 해당 지방 일간지는 피해자에게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석상 부장판사)는 17일 한나라당 양평, 가평 지역구 국회의원 정병국 의원과 지난 4.25 양평군수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강 모 씨가 지방 일간지 P일보와 이 신문사 기자 K(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정 의원에게 3천만 원씩, 강씨에게 5천만 원씩 총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P일보는 지난 4월 13일 K기자의 취재를 통해 신문 1면에 ‘양평군의 준공업지역을 매입한 C개발의 회장이 정 의원과 친구이고, 강 후보와도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강 후보가 군수

로 당선된 이후에 C개발에 아파트 건설 관련 특혜를 주기로 하는 밀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정 의원과 강 후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중재위에서의 사실확인 결과 기사에 나온 토지매입과 원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그러자 P일보는 4월 19일 정정보도문과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 기사가 나간 직후 기사를 인용해 원고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우편을 통해 양평군 일대 각 가정에 유포됐고, 다른 후보자들이 기사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을 성토하는 유세활동을 벌였으며 결국 강 후보는 4.25 양평군수 보궐선거에서 낙선했다.

이에 정 의원과 강 후보는 K기자를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P일보와 K기자를 상대로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

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며, K기자는 지난 7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되어 있는지 아무런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호소문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이 기사에 담긴 허위사실이 보궐선거를 불과 12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후보자로 출마했던 원고 강씨의 후보로서의 정직성과 자질을 실추시킬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 보도 후 강씨가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7년 10월 17일

## “포털도 언론으로 규정 책임 지우자”

인터넷 포털은 과연 언론일까 아닐까.

올 대선 여론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뜨겁게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언론재단·언론중재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포털 사이트에 사실상 인터넷 언론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과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포털 사이트도 언론(?) =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포털로 인한 각종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가 늘고 있는데도 여타의 인터넷 신문들과 달리 (포털은) 최소한의 피해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언론조정 및 중재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빠른 확산성, 무한 복제성,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포털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언론중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털과 관련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2004년 8건, 2005년 28건, 2006년 36건, 2007년 32건(9월 30일 기준)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학원 의원도 “포털이 기사제목을 수정하고 나름의 해석 작업을 통해 기사의 중요도를 평가·배열하는 등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언론의 범위 안에 포털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포털을 인터넷 신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커진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종이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지 않고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접하는 경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포털 사이트의 뉴스 배치가 기존 언론의 편집방향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포털 사이트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직접 기사를 생산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포털 사이트에 ‘언론’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끼워 입히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은 미디어다음과 블로거 기자단 등 일부 기사를 생산하고 있어 중간적인 위치에 있지만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는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를 인터넷에 띄우는 기능에 머무르고 있어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만을 놓고 언론이나 아니냐를 논하기는 어렵다.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단순 수치적 결과가 아니라 포털 사이트를 통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피해를 따져보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 개정으로 가는 것은 좀 빠르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 포털에 의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 받을 것인가 =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의 범위로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포털 사이트의 피해 구제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데서 시작되기도 한다.

언론중재법은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 신문의 정의에 준해 현재 포털 사이트를 언론중재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어 포털 사이트의 파급력에 비해 피해 구제 방안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중재를 거칠 수 있다. 하지

만 정작 기사 접근성을 높은 포털 사이트로부터는 구제받을 방법이 민간상담센터를 찾거나 소송을 내는 데 그친다.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에 포함시켜 언론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포털 사이트를 언론으로 볼 수 있느냐가 선결 과제라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 다음 제외 대부분 포털 ‘부정적’ =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하는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다음을 제외한 대부분 포털 사이트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정훈 다음 부사장은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통해 포털 뉴스로 인한 신속한 피해구제 등이 가능해지면 우리로서도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이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하는 입법에 찬성 입장을 내비친 것.

하지만 야후 코리아 관계자는 “우리는 언론이라기보다 기성 언론사의 뉴스를 공급하는 중립적인 채널 역할을 하며 그런 방향을 지향한다”며 “뉴스를 배치하고 제목을 약간 바꾸는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이 자사 정책에 바탕해 의제 설정을 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데 비해 우리는 그런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명을 요구한 다른 포털 사이트 관계자도 “기사를 직접 생산하는 것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해 보인다”며 “뉴스서비스는 포털이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 중 하나일 뿐이고 포털의 영향력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 2007년 10월 28일

## 법원 “SBS, 디앤샵·이재웅에 5천만 원씩 손해배상하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지난해 ‘바다이야기 사건’ 당시 SBS가 삼풍건설 합법체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금전적 손실을 끼쳤으며 ‘디앤샵’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재웅 전 대표이사가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씩 배상하고 방송 등을 통해 정정보도문을 내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보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암시하거나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한다”며 “(해당 보도는) 우연히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을 입수한 것을 계기로 충분한 조사 없이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디앤샵과 이재웅 전 대표는 ‘바다이야기 사건’ 당시 SBS의 보도에 대해 157억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노컷뉴스 2007년 11월 1일

## 임종인 의원, YTN 돌발영상 항소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19일 임종인 국회의원이 “동의 없이 촬영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YTN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포함돼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 국회의원들의 비인기 상임위 기피와 일

부 의원들의 불만을 보도하려는 것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물이고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표시한 것도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적 관심 대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TN은 지난해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장에서 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사적인 대화 등을 나누는 장면을 ‘돌발영상’으로 보도하고 인터넷에 게시했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파이낸셜 뉴스 2007년 9월 19일

## 심형래 퍼블리시티권 침해업체 2천만 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영화 ‘용가리’의 심형래(49) 감독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10억을 배상하라”며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 유통업체 (주)하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며,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과는 구별된다.

또한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 없이 성명이나 초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때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된다.

하림은 1999년 7월 심 감독이 대표이사인 (주)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측과 독점적으로 용가리 영화 및 디자인 캐릭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용가리 치킨’ 포장지에 심 감독의 모습을 형상화한 인물 캐릭터와 용가리 캐릭터를 담았다.

심 감독은 그러나 하림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포장지에 캐릭터를 사용하자 용가리 캐릭터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하림은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진 지난해 5월까지 계속해서 심 감독 및 용가리 캐릭터를 포장지에 사용했다.

이에 심 감독은 자신을 희화화한 캐

릭터를 사용해 영화제작자 및 영화감독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약 1년 5개월 가량 캐릭터를 계속 사용한 것은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심 감독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초상권은 일반인들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2007년 11월 1일

## 박상은 경인방송 전 대표 ‘한겨레’ 상대 소송 패소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상은(58) 전 경인방송 대표이사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경인방송을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욕이 있다’고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원심을 확정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다양한 정치인 경력

이 있는 점, 방송의 영향력과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령 등에 비춰 볼 때 <한겨레>의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2심 재판부도 “공익성과 함께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며 한겨레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04년 초 경인방송 노조는 박 씨의

서울 사무실에서 경인방송을 이용한 박 씨의 단계별 홍보전략 문건을 발견하고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겨레는 추가 취재를 거쳐 이를 보도했다. 이에 박씨는 “한겨레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1심에서 5억 원, 항소심에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겨레신문 2007년 9월 19일자

## 안기부 X파일 관련, 조선일보 비판한 MBC 정당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19일 조선일보가 ‘안기부 X파일’을 다룬 매체비평 프로그램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MBC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MBC ‘뉴스플러스 안미음 니’가 2005년 7월 29일 X파일 내용을 토대로 조선·중앙일보 등이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건강 문제를 다루면서 이회창 후보에 유리하도록 보도하고 자사 이익을 위해 X파일 사건의 초점을 불법 도청에 맞췄다고 보도하자,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방송이라며 1억 원의 손해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의 보도가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측면이 있지만 방송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언론과 재벌,

정치권력의 관계 등과 관련해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당시 기자들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신문 2007년 9월 19일

## 문국현 ‘월간조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범여권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자신의 스톡옵션 관련 의혹을 다룬 월간조선 10월호의 판매를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현 수석부장판사)는 18일, 문 후보가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낸 잡지발행판매 배포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잡지의 전면적인 판매 금지 또는 기사 말소를 명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잡지가 계속 판매돼 문 후보가 추가적으로 입게 될 피해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비해 그다지 크거나 급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 후보가

본안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도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언론기관은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음에 반해 명예훼손 피해자는 반론보도나 손해배상 등의 사후 구제 수단이 있다”며 “기사 게재 금지 등을 명하기 위해서는 표현내용이 허위이고 공익을 위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잡지가 이미 지난달 말 발행돼 상당수가 일반인에게 판매,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월간지 성격상 가처분 결정 이후에 추가로 서적을

발행해 배포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문 후보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시점을 전후해 각종 언론에 가처분 제기 사실 및 문 후보의 주장 내용이 상세히 보도됐고, 문 후보로서도 인터뷰 등을 통해 잡지 기사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후보는 “월간조선 10월호의 ‘추적, 문국현의 대선 출마선언과 스톡 옵션’ 제목 기사는 허위의 내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